

#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

제 정	2012.	7.
개 정	2014.	9.
개 정	2016.	3.
개 정	2020.	4.

## 제 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장애인차별금지및관리구제등에관한법률」 제14조 및 「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」 제30조, 31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”라 함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저하를 의미한다.
2. “교육·복지”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.
3. “장애학생지원센터”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.

**제3조(장애학생에 대한 배려)**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한다.

**제4조(차별의 금지)** ①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(신설 2014.09.01)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학생의 개별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(신설 2014.09.01)

1.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
2.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
3. 장애학생 개별상담 및 지도 등 보호자 참여 배제
4.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·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
5. 기타 장애를 이유로 한 그 밖의 거부, 배제 등의 차별

**제5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(개정 2014.09.01)

## 제 2장 조 직

**제6조(장애학생지원부서)** ①장애학생지원부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)를 둔다.(개정 2020.04.13)

②장애학생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장애학생지원서비스 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 교수·학습지원 및 조정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
3. 장애학생 학사, 진로,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
4. 도우미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
6. 장애학생 편의시설·설비의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
7.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
8.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9. 기타 장애학생 지원개선 업무 등에 관한 사항

③센터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상담교수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0.04.13)

**제7조(구성)** 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0.04.13)

②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0.04.13)

③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 지원을 위하여 부센터장, 연구원 및 전담직원과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  
(개정 2020.04.13)

### 제 3장 교수·학습지원

**제8조(교수·학습지원)**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·학습권고 안내문 발송 등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을 위한 학사, 진로,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
3.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·학습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
5. 장애학생을 위한 강의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
6. 교직원 등의 장애인식교육에 관한 사항
7. 장애학생 교육복지실태에 관한 사항
8.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에 필요한 사항

**제9조(편의시설지원)**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내이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편의시설·설비 개선 및 지원
2. 장애학생의 교내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
3.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파악 및 공개
4. barrier-free(무장애 환경) 공간 및 시설 확충(신설 2016.03.01)

### 제 4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**제10조(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)** ①장애학생 교육·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를 둔다.(개정 2020.04.13)

②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행정부총장을 위원장, 학생생활종합지원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, 학생복지처장, 교무처장, 입학처장, 총무처장,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개정 2020.04.13)

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. 장애학생 교육·복지지원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
**제10조의2(편의증진심의회)의 설치** (삭제 2020.04.13.)

**제11조(자문위원)** ①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타기관의 장애인전문가(장애인 관련 교수, 특수교육 관련 교수, 장애인고용전문가, 장애인단체장 등)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0.04.13)

②자문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관련부서 등의 협조)** 센터는 심리상담, 진로지도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간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.(신설 2014.09.01)(개정 2020.04.13)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